

##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

제정 2022년 2월 4일 조례 제198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오산시에서 설치한 공영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시설의 명칭은 오산시 공영터미널(이하 “터미널”이라 한다)이라 하고, 위치는 역광장로 59 오산역환승센터 2층에 둔다.

**제3조(사업의 범위)** 시장은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
2.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
3.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 및 개선
4.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

**제4조(운영 및 관리)** ① 터미널은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·관리한다.  
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,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용·수익허가)** 시장이 터미널을 사용·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.

**제6조(사무의 위탁)**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수탁재산의 관리)** 사용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라 수탁재산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사용자의 행위제한)**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

1. 시내(마을)버스, 시외·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·정차시키는 행위
2. 「소방기본법」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
3.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,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
4.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

**제9조(적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적용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